

#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  
안녕하십니까? 박춘선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 외 20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난임  
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  
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- 동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난임지원사항에 영양과 운동 지원 등  
의 건강지원 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.
- 현재 난임지원정책은 위기에 처한 저출생 문제의 주요 대응 정  
책으로 시술비용 지원 및 난임 우울증 심리상담 지원 등이 활  
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
- 그러나 난임은 생식건강과 관계된 부분으로 영양과 운동 등 건

강지원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. 이에, 이를 조례 규정하여 난임부부의 건강증진 및 임신과 출생률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.

-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 
제7조 제1항 제4호 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로 난임부부를 위한 건강지원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.
  
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,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